#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4746

제출연월일: 2024. 10. 17.

제 출 자:정 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영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중 "6개월 이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업등의 등록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	②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의 등록	
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l
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2의4. (생 략)	1. ~ 2의4. (현행과 같음)
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	3.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적이 없는 경우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